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에 관한 대행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영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가 “재단”에게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기금조례”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의미한다.
2. “기금조례규칙”이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의미한다.
3. “기금”이란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의미한다.
4. “사업”이란 위 제3호의 “기금”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기금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과 제12조에 따른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5. “경영안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6. “시설자금”이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개선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건설사업, 호텔사업, 숙박사업 또는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사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7. “운영세칙”이란 “기금조례규칙” 제30조 제6항에 따라 “재단”이 대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하는 세부운영규정을 의미한다.

제3조(대행사무) ① “시”가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대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자신청관련 업체에 대한 상담과 응자신청서 접수
2. 응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응자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4. 응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응자규모 확정관련 수반되는 제반 업무
5. 응자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가. “기금조례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대여기관에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요구
나. “기금조례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6.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www.seoul-dream-money.co.kr)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등 관리업무

7. 기타 “사업”과 관련한 “기금” 운용사무와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무

② 제1항의 대행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대행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행사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的 승인을 받아 제1항의 대행사무 일부를 민간단체 등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응자지원 사업” 및 “금융기관 협조응자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에, “기금조례규칙” 별표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융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자금”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 관리 기간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재단”은 대행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금조례” 및 “기금조례규칙”,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과 “시”的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제정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的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시”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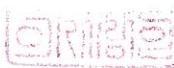
제4조(대행기간) 위 협약에 의한 사업의 대행기간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대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행사업비)**
- ① “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재단”에게 지급한다.
 - ② 대행사업비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www.seoul-dreammoney.co.kr)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 평가수수료 및 사후관리수수료로 구분한다.
 - ③ 평가 수수료는 “재단”的 평가에 의해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포함)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0.1%(단, 시중은행협력자금은 0.05%)를, 사후 관리 수수료는 사후관리 대상업체 성과분석 평가시 대출잔액 기준으로 0.05%를 지급하며,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④ “재단”은 평가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지원업체 명단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성과분석 후 3개월 이내에 결과서와 함께 “시”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는 “재단”的 청구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은 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규모 등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원·심의대상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이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며, 운영세칙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업체의 선정) ① “재단”은 “시”가 공고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이 가능한 업체(융자지원금액 포함)로 평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시장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은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규모를 금융기관(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을 의미함)에 서면통보하거나 전자통지 하여야 하며, 선정된 융자대상업체에도 그 결과를 유선 통지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의무) “시”는 필요한 때에는 이 협약에 의한 대행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的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的 업무 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대행사업과 관련한 “재단”的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 “재단”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재단”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시”는 “재단”的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와 “재단”은 합의에 의해 대행기간 만료 전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시”的 중소기업육성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이 협약에 의한 융자 사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재단”이 이 협약에 의한 대행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4.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的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대행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

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재단”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대행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재단”이 대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재단” 또는 그 임직원이 대행 및 이 협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재단”的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재단”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 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행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제2항 제4호, 제9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업무에 한하여 업무 종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的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的 조례, 규칙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的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的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제3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전년도 11월 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 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1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 운영세칙을 작성하고 “시”的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이 개시되는 날부터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대행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대행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대행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재단”이 책임을 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시” : 서울특별시장 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